

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윤종호 의원 외 21명

나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윤종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도 학생 통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2021년에 제정되었음.
-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조례 제6조 통학지원으로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6조는 교육감이 도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고, 학교의 장은 인근 학교와의 통학차량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내용에
 - 통폐합학교, 과대학교 등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1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학생의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학생 통학 관련 안전 확보 및 교육접근성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, 학생들의 통학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.
- 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통학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